

지난 18일 「서울대 禹
조교」 성희롱사건」에서
3천만원의 배상판결을
내렸던 담당재판부가 판

부판재 성희롱판결 「희롱電話」 시달린다

94.4.24

결 이후 주로 남성을 부판
터 걸려오는 항의성 전
화에 심한 후유증을 앓
고 있다.
이 사건 재판장인 서

울민사지법 朴壯雨부장
판사는 23일 『판결 이후
매일 5, 6통씩 시민들
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
있다』며 『응기있는 결단
이었다는 격려전화도 있
지만 비난전화가 대부분
이어서 매우 난처한 입
장』이라고 털어놓았다.

차부장판사는 특히 세

가정내 “3천만원이라고 하니

얼마 아니냐” “근치판결” “너스

간에서 “응답패설을 하
면 ×백만원” “여직원의
종아리를 힐끔거리면 ×
천만원” 게다가 “돈만 있
으면 성희롱 한번 해보
시지”라는 식으로 이번
판결이 ‘희롱’이라고 있
는데 대해 불쾌감을 감
추지 못하고 있다. 심지어
어 일부 법조인들 사이에

서까지 『서류에 영합한
논치판결』 『대통령에 출
마하면 여성표 2천만표
는 싹쓸이할 것』이라는
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
있어 차부장판사를 곤혹
스럽게 만들고 있다는
것.

주로 남성을로부터 걸
려오고 있는 전화내용은

대체로 『어깨 좀 쓰다듬
고 손 좀 만진 것 가
지고 무슨 3천만원이
나는 것으로 거액의 위
자료사청에 대한 비난조
의 목소리들이다.

이에 대해 차부장판사
는 『3천만원의 위자료
계산은 申모교수가 禹조
교를 뒤에서 껴안는 듯

한 자세를 취하거나 어
깨를 쓰다듬는 등 성적
희롱행위 자체를 단순
산술계산한 것이 아니
다』며 입장이 해명하느
라 진땀을 빼고 있다.

그는 『3천만원이라는
적지 않은 액수를 배상
토록 한 것은 申교수가
禹조교의 성희롱거부후
재인용탈락까지 6개월
이상 禹조교의 활동범위
를 실험실로 제한하고
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등
부당한 대우를 한데 따
른 정신적 고통을 크게
감안한 것』이라고 설
명했다.

그는 또 『명문대 교수
가 다른 곳도 아닌 학교
안에서 제자를 성희롱했
다는 점이 다소 응징성
의 무거운 위자료 책입
을 지우는데 참작됐다』
고 덧붙였다. (金正勳)